

[문제집 정정]-개정9판

[p.15]

4. 등기기록의 폐쇄와 부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7 법원능력검정 변형]

- ① 등기기록의 폐쇄와 부활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 ② 등기기록이 폐쇄되면 이를 부활하지 않는 한, 그 등기기록에는 어떤 사항도 등기할 수 없다.
- ③ 등기기록의 폐쇄와 부활은 기타사항란에 그 뜻과 연월일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등기기록을 부활한 때는 등기기록을 폐쇄한 뜻과 그 연월일의 등기를 말소한다.
- ④ 해산의 등기를 한 후 또는 해산된 것으로 된 후 10년이 지난 회사 및 합자조합의 등기기록은 폐쇄할 수 있다.
- ⑤ 회사의 관할외 본점이전등기로 인하여 구 본점관할등기소의 등기기록이 폐쇄되고 신 본점관할등기소에서 등기기록이 개설되더라도 법인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는다.

**해설** ① 등기기록의 폐쇄와 부활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 즉 당사자가 청산종결의 등기,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 등을 신청하면 등기관이 그 등기를 완료함과 동시에 직권으로 해당 등기기록을 폐쇄하고(상등규 116조 등), 당사자가 청산종결의 등기 등의 말소를 신청하면 그 등기를 완료함과 동시에 해당 등기기록이 부활된다(상등규 58조 2항). ②③ 상등규 58조 1항, 2항. ④ 상등 19조. ⑤ 법인'등록'번호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에 대응하며 특별한 사유가 아닌 한 변경등기로 인해 변경되지 않는다(↔ 법인'등기'번호는 관할외 이전시 변경됨).

**정답** 4. ①

<정정 부분>

[해설] ① 등기기록의 폐쇄와 부활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 즉 당사자가 관할 외 본점이전등기, 청산종결의 등기,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 등을 신청하면 등기관이 그 등기를 완료함과 동시에 직권으로 해당 등기기록을 폐쇄하고(상등규 116조 등), 당사자가 청산종결의 등기 등의 말소를 신청하면 그 등기를 완료함과 동시에 해당 등기기록이 부활된다(상등규 58조 2항).

=> '관할 외 본점이전등기'는 2025. 1. 31.부터 등기기록을 폐쇄하지 아니하고 종전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 새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로 처리권한을 이관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음.

[p.70]

5. 다음 등기신청 중 각하의 대상이 아닌 것은?

- ① 등록면허세 또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내지 않고 등기를 신청한 때
- ② 동일한 등기사항에 관하여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등기신청이 순차로 접수된 경우에 나중에 접수된 후행 등기신청
- ③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주식청약서 기재의 납입은행과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의 발행은행이 서로 달랐지만 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은 때
- ④ 주주총회의사록 상으로 5명의 이사를 선임하였지만 2명의 이사에 대해서만 등기요건을 갖추어 취임등기를 신청한 때
- ⑤ 서울에 본점을 둔 회사가 부산에 지점을 설치하고 해당 지점에 지배인을 두는 경우 그 지점 및 지배인에 관한 등기신청을 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신청한 때

**해설** ① 상등 26조 17호의 각하사유. ② 이중등기(상등 26조 3호). ③ 첨부서류 미첨부(상등 26조 8호). 주금납입금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므로(상 425조, 306조), 이 경우 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상등규 128조 1항). ④ '신청서와 첨부서면 및 이와 관련된 등기기록의 각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상등 26조 9호)'라 함은 ㉠ 신청서의 기재가 등기기록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는 때, ㉡ 신청서의 기재가 첨부서면의 기재와 맞지 아니하는 때, ㉢ 첨부서면의 기재가 등기기록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는 때, ㉣ 첨부서면의 기재가 서로 맞지 아니하는 때를 말하는데, 등기관은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기준으로 그에 대한 첨부서면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므로, 신청이 있는 부분(2명)에 대한 첨부서면에 이상이 없다면, 신청이 없는 부분(3명)에 대하여 첨부서면의 내용을 심사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된다. ⑤ 회사의 등기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하므로(상 34조), 회사의 지점 뿐 아니라 지배인에 관한 등기 역시 회사의 본점 등기기록에 하여야 한다(회사의 경우 지점의 등기기록을 별도로 개설하지 아니한다). 관할위반의 각하사유가 아님.

**정답** 5. ④, ⑤

<정정부분> 복수정답 : 기존 ④ 뿐 아니라 ⑤도 각하대상이 아니어서 둘 다 정답임.

[p.295]

7. 합자조합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3 법무사 29회]

- ① 합자조합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리할 권한이 있는 자가 신청한다.
- ② 유한책임조합원의 경우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③ 업무집행권이 없는 조합원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등기하여야 한다.
- ④ 합자조합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 등기와 달리 과태료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등기 해태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⑤ 합자조합의 주된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새로운 주된 영업소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종전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해설** ① 상 86조의5 1항. ② 상 86조의8 3항, 272조. ③ 상업등기규칙 92조 2항. ④ 상법 제2편의 합자조합과 상법 제3편의 회사에 관한 등기의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해태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상 86조의9, 181조 내지 183조, 635조 1항 1호). 상업등기에 해당하는 '개인상인', '회사', '합자조합'의 등기 중 '개인상인'의 등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다. ⑤ 합자조합의 주된 영업소 이전에 따른 등기는 회사의 본점이전등기절차와 동일하므로(상 86조의8 1항, 182조 1항; 상등 53조, 54조 내지 56조; 상등규 96조 1항, 99조1항, 116조 1호, 96조 4항, 115조 1항 등), 회사의 본점 이전 등기와 마찬가지로 종전 주된 영업소 소재지 또는 새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주사무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7. ④, ⑤

<정정부분>

[복수정답] : 기존 ④ 뿐 아니라 ⑤도 옳지 않은 지문임.

[해설부분] ⑤ 합자조합의 주된 영업소 이전에 따른 등기는 회사의 본점이전등기절차와 동일하므로(상 86조의8 1항, 182조 1항; 상등 53조, 54조 내지 56조; 상등규 96조 1항, 99조1항, 116조 1호, 96조 4항, 115조 1항 등), 관할외 주사무소 이전등기시에는 구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하여야 한다. 회사의 본점 이전 등기와 마찬가지로 종전 주된 영업소 소재지 또는 새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주사무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